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, - 수탁자에게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물적납세의무 부여* <p>*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 동일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 추가

□ 개정 내용

-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재산세 관련 규정 준용 근거 추가

□ 적용 요령

-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

|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